

[별지 제12호서식의(가)] 삭제 <2004.3.12>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 1. 선거명(선거구명)
 - 2. 소속 정당명
 - 3. 성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6. 직업
 - 7. 학력
 - 8.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당 인

대표자 ○○○ 인

(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6)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7)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8)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9)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0)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1)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3) 인영신고서
(14) 기탁금 입금표
(15)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 주: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부

○○당

추천순위	후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별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 주: 1. 후보자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와 후보자명부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명부가 2매 이상일 때에도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바)]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개정 2015.8.13.>

후 보 자 분 인 승 낙 서

1. 소속 정당명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인

○○당 귀중

[별지 제12호서식의(사)] (규칙 제20조제7항·제26조제4항 관련) <개정 2015.8.13.>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신청인	성명 (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p>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당 [인] 신청인 { 대표자 ○○○ (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 ○○○ (인)</p> <p>○○경찰서장 귀하</p>				

주 :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 "별지 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회보서

성명	한글	선출직 공직경력	직명 재임기간	주민등록번호
	한자			
등록기준지				
주소				

1. 피선거권(「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유무)

조 회 내 용	해당유무		피선거권 결격 수형내용
	유	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2.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건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 이하 나·다·라목에서 같음)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3.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 이하 나·다목에서 같음)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 4.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당유무(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해당유무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의 해당유무			

2. 전과기록

조 회 내 용	진위여부	
	진	위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기재된 전과기록[벌금 100만원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을 말함]의 진위여부		
덧붙임 : 전과기록(실효된 형 포함) 1부		
위와 같이 회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명 인

- 주 : 1. 법 제60조의2제8항 및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구·시·읍·면장 및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을 조회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회보서"로, 법 제49조제10항 후단 및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관한 범죄경력 회보서"로,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을 법 제49조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범죄경력 회보서"로 서식의 제목을 바꾸어 사용합니다.
2.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선출직 공직경력"란에는 조회대상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재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검찰청의 장이 전과기록의 진위여부 중 "위"란에 "○"표를 하여 회보하는 경우 "덧붙임 : 전과기록(실효된 형 포함) 1부"를 기재하고,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덧붙여서 회보하여야 합니다.

금치산 선고 회보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등록기준지					
주소					
조회사항	담당유무		선고내용		
	유	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해당유무					
상기와 같이 회보함.					
년 월 일					
확인기관명					인

[별지 제12호서식의(차)]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개정 2026. 4. 22.>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납세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input type="checkbox"/> 재산세 <input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첨부서류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납세신고사항"란에는 소득세 등의 신고사항을 "√"등으로 표시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은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정당명		선거명 (선거구명)						성명					
(단위 : 천원)													
연도	후보자와의 관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 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 납 액	납부 세액	해당연 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 납 액	납부 세액	해당연 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 납 액	납부 세액	체 납 액	현 체 납 액
○○○ 년도													
	소계												
○○○ 년도													
	소계												
○○○ 년도													
	소계												
○○○ 년도													
	소계												
합 계													
	합계												

- 주: 1.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4. 소득세등의 납부·체납증명서 제출대상자 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 과세분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파)] (규칙 제20조제7항 관련) <개정 2026. 4. 22.>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 거 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
<p>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위 (후보자)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1.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을 기재합니다.
3. "소속정당명"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당시 추천정당명을 기재하며, 무소속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선 또는 낙선 여부"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라고 기재합니다.